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② 계약기간

- 1) 기본적으로 등급 받는 기간으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등급 받는 기간으로 한다.
  - (3)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4)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은 유효하다

### ③ 준수사항

-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등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항상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한다.

## 제30조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본인 부담금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제3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제3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제공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